

— 청소년재단 안전보건분야 총괄관리 및 체계적 시행을 위한 —
2026년도 안전보건계획(안)

요 약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청소년활동진흥법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가이드라인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2026년 안전보건계획 추진방향

- 비 전 : 청소년과 시민이 안전한 활동공간
- 목 표 :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 대응을 통한 안전과 신뢰 제고
- 추진전략 : 중대재해 예방, 근로자 안전강화, 선제적 안전관리, 기본에 충실





목 차



I. 안전보건 경영방침	01
II.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04
III. 안전보건 예산 및 시설 현황	05
IV. 2025년 안전보건 활동실적	07
V. 2026년 안전보건 활동계획	11

- 안전보건분야 총괄관리 및 체계적 시행을 위한 - 2026년 평택시청소년재단 안전보건계획

안전·보건 교육 및 시설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최종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보호

I 안전보건 경영방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재난 안전 대응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대두

□ 추진근거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24.9.6. 개정)

제6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공공기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에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주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이사회가 없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을 거쳐 확정한다.

⑤ 공공기관은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22.10.31. 개정)

- 제6조(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①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3.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 ③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산업재해 감축목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 확정하여야 한다.
- ⑤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의 이행 실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 ⑥ 지방공공기관은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한다) 및 제5항의 이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진목적

- 선제적 안전관리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안전가치 실현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의거, 안전보건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산업재해 및 인명피해 감소

2. 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평택시청소년재단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Zero화』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인적·물적 피해 경감 목표 설정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안전보건 경영방침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은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재단은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 재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매년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6년 1월 1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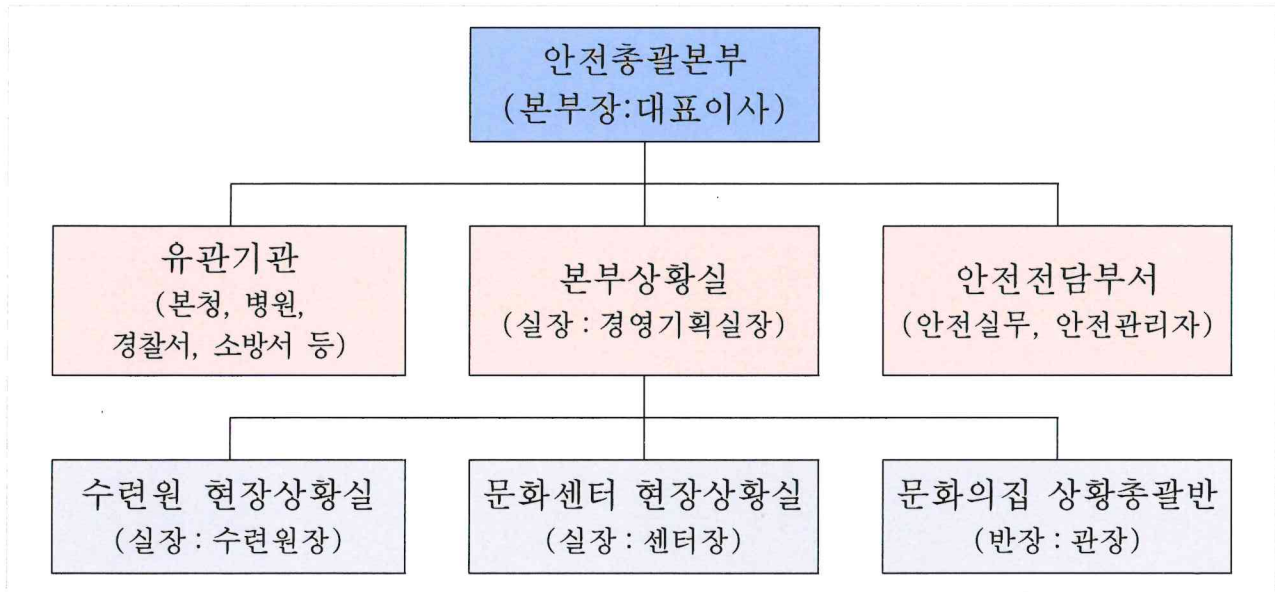
(재)평택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 재 남 (서명)



II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 인원 및 역할

□ 평택시청소년재단 안전보건 조직 구성



□ 평택시청소년재단 안전보건 인원 및 역할

구 분	직 책	주요 업무내용
총괄본부장	대표이사	비상상황 발생시 재단 전체 총괄 지휘
본부상황실장	경영기획실장	- 총괄 본부장 부재시 역할 대리 - 각 센터 별 대응 활동 지휘 - 평소 비상사태에 대비한 센터별 대응체계 구축
현장상황실장	각급 기관장	- 현장 상황 관리 및 보고 - 현장대응반(진압, 방재, 대피 유도반 등) - 각급 기관장 총괄·안전관리자 지휘하 운영
안전담당자	산업안전담당자	- 경찰서/소방서, 관계 행정기관 등 신고 - 비상상황 상위 보고 및 직원 통보 - 긴급 구호 및 안전조치 실시
-	임직원 전체	- 초기 화재 진압, 통로 확보, 각 팀원 전파 - 중요물품 시건 및 이동 - 부상인원 구조 및 상해자 병원 긴급 후송

○ 안전인력 : 3명(수련원: 안전관리자 1명, 보건담당 1명 / 센터: 안전관리자 1명)

- 소방관리자 등 2종시설 2개소 법정 선임대상 인력

- 보건실 운영 및 이용객·직원 건강증진 전반에 관한 업무 수행(1명)

- 기타 안전업무 인력 : 4명(재단, 문화의집 3개소 각 1명)

III 안전보건 예산 및 시설 현황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안전보건 예산현황		
	2024년	2025년	2026년
계	801,930	481,976	480,0490
경영기획실	419,713	10,200	6,110
무봉산청소년수련원	267,897	375,266	295,699
청소년문화센터	109,180	90,170	119,295
북부청소년문화의집	2,400	3,600	5,728
안중청소년문화의집	1,000	1,000	47,814
팽성청소년문화의집	1,740	1,740	5,844

※ 안전보건 예산은 기관별 시설 규모, 인원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상이함.

□ 일반현황

- 평택시청소년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및 관계법령과 설립조례에 의거하여 총 5개소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을 위·수탁 운영 중에 있음
- 청소년 및 가족단위 시민의 주된 이용에 따라 시기 유형별 안전계획 및 환경이 고려된 안전규정·조직 확립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 있는 안전관리 운영이 요구됨

□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 총 5개소

순번	시 설 물	준공연도 (연)	사용연수 (연)	정밀안전점검		주용도	적용법
				실시연도	결과		
1	무봉산청소년수련원	1999	25	2025	B	▶다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 2중	▶시특법 ▶산업안전보건법
2	청소년문화센터	2001	23	2025	B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3	북부청소년문화의집	1999	25	—	—	▶다중이용시설	▶산업안전보건법
4	팽성청소년문화의집	1990	34	—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5	안중청소년문화의집	—	—	—	—	* 서부청소년센터 신축공사로 인하여 행정복지센터 임차중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 2개 시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센터)

→ 정기·정밀·긴급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의무 시설물

○ 재난관리법상 국가기반시설 : 해당없음

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지는 사업 혹은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법’)상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따른 적용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 관리조치 이행 의무 사업장

* 안전조치 대상분류(산안법 안전보건조치 제14조~제34조 관련)

구분	업종분류	안전보건 관리체계	안전보건 관리규정	안전보건 교육	비고
공통적용 (관리시설 5개소)	[85] 교육서비스 (청소년수련 시설운영업)	적용	미적용	적용	-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사항(시행규칙 별표4): 정기교육(근로자, 감독자), 채용 시 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 확대에 의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적용 사업장으로 변경

②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시설·안전·위생 기준유지
자체점검 및 주관부처 종합점검 수검 등 안전관리 의무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활동진흥법 제 10조 관련)

구분	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5개소	1개소	1개소	3개소	-	-

공공 위탁시설 관리주체로서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위한
청소년재단 운영기관 일괄“안전관리 대상시설”적용.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시설 위·수탁 운영근거 >

- 평택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8조(사업의 위탁)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 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IV

2025년 안전보건 활동실적

□ 안전사고 발생건수

(단위 : 건, 명)

구 분		2023	2024	2025
총 사고 발생건수		31	16	30
인명피해 ¹⁾	사망자 수	0	0	0
	부상자 수	31	16	30

□ 안전사고 유형 분석

(단위 : 건)

유형구분		최근 3년 안전사고 건수		
		2023	2024	2025
계		31	16	30
산업재해 (산업재해 보상)	건설(용역) 발주	0	0	0
	직원 안전사고	2	0	3
일 반 안전사고 (일반보험, 보건기록 등)	일반시설 안전사고 (대관, 수련활동 등)	23	14	24
	여가시설 안전사고 (수영장, 눈썰매장 등)	3	2	3
	기타 안전사고 (작업부상, 차량운행, 기타)	3	0	0

- (경미한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 안전 사고의 대다수는 대관 및 수련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안전 사고가 약 75%를 차지, 산업재해는 2건으로 집계

1) 인명피해 산정: 안전사고 총 집계건 중 대물피해를 제외한 대인피해 발생에 한하여 산정

□ 안전사고 발생원인 판단 및 대책마련

① 청소년·시민 등 이용안전 사고피해

- 청소년재단 산하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통계결과 내부직원 및 하청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 설비 하자 및 개축과정에 의한 사고는 전무하며, 숙박·대관의 수련시설 및 다수가 단시간 내 이용하는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중 발생하는 청소년 및 이용시민 사고가 다수를 차지함

－ 이용시설 위험·안전요소

구 분		시설 수	이용대상	위험요소	비 고
수련 시설	숙박형	1개소	청소년	생활안전(대인원 숙박) 및 환경요소(야생동물, 외지), 청소년 활동 중점 고위험 챌린지 시설 존재	수련원
	비숙박형	4개소		대관업무로 인한 유동인구 밀집 및 안전취약 계층(유아 등) 관리, 정기 이용청소년 등 이용안전 중점	문화센터, 문화의집(3개소)
여가 시설	여가시설	2개소	가족단위	야외 수영조(유기구 포함) 및 수상안전, 눈썰매장 슬로프 등 체험(이용)시설 안전중점	수련원 (물놀이장, 눈썰매장)

[시설이용자 안전수칙 마련]

- ① 입소청소년 대상 생활·취침 지도 등 생활안전 관리철저
 - ② 입소청소년 단체 수련활동 시 대인원 통제 및 유기적 위험요소 관측
 - ③ 상시개방 입·출입 청소년 및 보호자 미 동반 유아 대상 실시간 안전관리
 - ④ 일반 이용객·청소년 단체 등 시설대관 시 관측불가 안전사고 개별 안전관리
- ※ 관련 문제점 : 수요인원 대비 안전관리 인력부족, 대단위 인원수용 재난안전 대응력 제고

② 내부직원 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제고의 필요성

-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자 안전관리 역량강화 필요

－ 일반안전사고 사례 중 수련활동 생활안전(숙박) 및 야외활동에 의한 경미한 사고의 비율이 높으므로 수련활동의 안전운영을 위해 지도자별 수준 높은 안전관리 역량 유지가 요구됨

- 청소년수련시설 재난안전관리 체계 및 대응력 강화

－ 최근 국가 재난상황의 지속 및 경보발령 등에 따른 중요성을 감안하여 내부직원 책임부여 위주의 유형별(화재·대풍·폭우·지진 등) 대응체계의 확립을 통한 전사적 안전의식 및 대응역량의 강화 필요

○ 내부직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2. 8. 18.)에 따른 보호대상 강화 및 안전보건관리 중요성 대두에 따라 재단소속 임직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관리 및 교육확대 등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확립 필요
- 전년도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직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반복적인 사고 및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

[내부직원 안전교육 실시]

no.	교육대상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임직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상, 하반기 각 6시간 (총 12시간)			
2		응급처치 및 직장교육 (수시교육)			
3	신규임용자	채용시 8시간 (수기교육)			
4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 교육 (8시간)			

③ 기타 위험요인 분석

○ 고위험 시설 운용에 따른 위험요인

- 위험요인 : 짚라인, 인공암벽, 챌린지 시설 등 고소에 위치한 낙상 우려가 있는 시설
- 검토사항 : 상시 개선확인 및 야외설비의 노후측정 등 선제적 안전확보

○ 외부환경에 따른 위험요인

- 위험요인 : 산간지대(야간 산악활동) 및 시설인근 하천 등
- 검토사항 : 정기 프로그램내 야간 산행 및 이용시설내 하천 등
외부 환경에 의한 사고발생의 우려로 시기에 따른 환경변화 대응 및 철저한 이용인원 통제 필요

- 위험요인 : 야외 수영장, 물놀이장, 눈썰매장 등 해당 계절 이외 사용중지 시설
- 검토사항 : 시민 여가제공을 위한 계절(여름·겨울) 프로그램 운영됨에 따라 사전정비·정돈 및 운영으로 사용기간외 장기방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

no.	구분	2025년			비고
		목표	실행	달성도(%)	
1	(석면)건축물 안전점검	2회	2회	100%	상/하반기 각 1회
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12회	12회	100%	매월 1회
-	안전관리체계 및 교육				필요시
-	사용자&근로자 합동안전점검				(신설) 반기 1회

[illegible]

-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때 작업을 중지한 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 ‘아차사고’란 생명·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산업재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사고를 말하며 수차례의 아차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통상 산업재해로 이어짐
- 재단 협업업무 종사자 및 도급·용역·위탁사업 종사자 아차사고 신고 제도 운영

비 전

청소년과 시민이 안전한 활동공간

목 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안전대응을 통한 안전과 신뢰 제고

추진전략

추진항목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 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 충실한 이행
- ③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복구 매뉴얼 마련



[근로자 안전강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안전 강화

- ① 내부직원 산업재해예방 및 인식 내재화
- ② 근로환경 개선 및 질병 예방 건강보호
- ③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



[선제적 안전관리]
위기대응체계 강화
철저한 노후시설 관리

- ① 이용자 동반 실질적 위기대응 교육훈련 실시
- ② 노후시설 관리·보강을 통한 안전기반 조성
- ③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안전관리자역량강화



[기본에 충실]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

- ① 안전경영방침 선포 및 통합 관리계획 수립
- ② 안전전담조직 구성 및 안전규정 수립 의무화
- ③ 법정·수시 안전점검 이행 및 개선

□ 26년 평택시청소년재단 안전보건 추진 목표 세부 목표 및 계획

○ 평택시청소년재단 2026년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총 사고 발생 건수		30	29	28	27
재산 피해(백만원)		9.5	9	8.5	8
인명피해 (명)	계	30	29	28	27
	사망(실종 포함)	0	0	0	0
	부상(환자 포함)	30	29	28	27

○ 2026년 시설별 세부목표 할당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6년 재단목표	시설별 안전경영 목표		
		수련원	문화센터	문화의집 (3개소 합계)
총 사고 발생 건수	28	15	10	3
재산 피해(백만원)	8.5	4.5	3	1

▶ 관련규정에 의거, 중장기 목표 및 시설별 경감목표를 설정하나 당해 안전사고 미 발생을 원칙으로 하여 안전 경영 추진 및 자체평가 실시

-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실질적 안전사고 경감 실적 점검(재단 경영실적평가 반영)
- 단순 사고경감 외의 안전경영 활동계획에 의한 경영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시민과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 플랫폼 조성 및 공공기관 의무 이행

○ 안전보건 추진 계획

가. 중대재해 예방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① 안전보건 의무 이행 현황 점검

-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준으로 자가체크리스트(서식1) 제작
- 자가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형성을 위해 노력

② 위험성평가 등 안전보건 의무 충실한 이해

-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반기)하여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

③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복구 매뉴얼 마련

- 다양한 사고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무 카드(서식 2,3)를 배부하여 직원들이 침착하게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나. 근로자 안전강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현장안전 강화)

① 내부직원 산업재해예방 및 인식 내재화

- 계절별 주요 사고 원인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ex. 겨울철 화재 예방 안내 / 적설로 인한 사고 예방점검 등

② 근로환경 개선 및 질병 예방 건강보호

- 현장직(매년), 사무직(격년)에게 건강검진 지원

③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문화 확산

- 아차 사고를 발굴하여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ex. 올바른 중량물 취급, 올바른 근무 자세 등

다. 선제적 안전관리 [위기대응체계 강화 및 노후시설 관리]

① 이용자 동반 실직적 위기대응 교육훈련 실시

- 소방서와 합동 소방 훈련을 계획 및 실시
- 가상 시나리오 제작 및 직접 역할을 배분하여 훈련 실시

② 노후시설 관리 및 보강을 통한 안전기반 조성

-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연차별 시설보강계획을 수립 및 실시
-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선제적인 시설개선 사업 실시

③ 안전관리 의무부여 및 안전관리자 역량강화

-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개인이 희망하는 교육 지원
- 선임된 자격증 보수 교육 지원

라. 기본에 충실 [안전경영 시스템 구축]

① 안전경영방침 선포 및 통합 관리계획 수립

- 안전보건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 수립

② 안전전담조직 구성 및 안전규정 수립 의무화

- 안전보건 조직 및 비상대응 체계 구성

③ 법정·수시 안전점검 이행 및 개선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2(수련시설의 안전점검)에 따라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안전경영 선언문

(재)평택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안전을 위한 안전경영이 모든 청소년활동의 최우선 가치임을 표명하고 안전보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경영 방침을 선언한다.

-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안전한 청소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 하나. 평택시청소년재단의 청소년수련시설은 활동 및 안전을 위한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하며 안전·보건활동을 적극 실천한다.
- 하나.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작성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하나. 집단감염병 등 재난, 비상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 하나. 임직원, 시민, 청소년의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정책 결정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 하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시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안전 의식을 증진한다.
- 하나. 전 임직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상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2026년 1월 1일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일동

[서식 1] 안전·보건 관리체계 형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법률적 근거		(점검 시기) /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법	시행령		양호	보완
제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호	(년)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제4조 제2호	(년)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제4조 제3호	(반기)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위험성평가 실시)		
	제4조 제4호	(년) 재해 예방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제4조 제5호	(반기)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충실 이행		
	제4조 제6호	(년)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제4조 제7호	(반기) 종사자 의견청취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제4조 제8호	(년)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제4조 제9호	(년) 도급·위탁·용역 등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제2호	—	(년)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제3호	—	(반기)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 명한 사항 이행		
제4호	제5조 제2항 제1호	(월)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제5조 제2항 제3호	(반기) 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작업자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서식 2] 자체 안전반 임무 카드 & 대형사고 발생시 임무 카드

가. 자체 안전반 임무 카드

내부 안전반 (진압 및 구조반)			외부 안전반 (피난 유도반)		
상황		개인별 임무	상황		개인별 임무
10분 이내	안전사고	사고자 상태 파악 119에 신고	10분 이내	안전사고	사고 발생 통보 사고 현장 통제
	화재사고	화재 초기 진압 및 인명 구조		화재사고	피난 안내 및 119에 신고
30분 이내	안전사고	현장 질서 유지 및 119 안내	30분 이내	안전사고	현장 질서 유지 및 119 안내
	화재사고	소방서 지시에 따름		화재사고	소방서 지시에 따름
1시간 이내	안전사고	사고 현장 수습 및 지시 사항을 따름	1시간 이내	안전사고	유관기관 및 상급자 보고
	화재사고			화재사고	

나. 대형 사고 발생시 임무 카드

내부 안전반 (진압 및 구조반)			외부 안전반 (피난 유도반)		
상황		개인별 임무	상황		개인별 임무
10분 이내	지진사고	긴급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	10분 이내	지진사고	대피 경로 확보 및 안내
	테러·협박	전화를 유지하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도출		테러·협박	112에 신고, 상급자 및 상위기관에 보고
30분 이내	지진사고	가스 및 전열 기구 작동 중지 (2차 피해 예방)	30분 이내	지진사고	청소년 및 직원 피난 유도 및 안내 방송 실시
	테러·협박	경찰 및 상위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		테러·협박	대피 유도 및 인원 통제
1시간 이내	지진사고	라디오 등을 통해 지속적인 상황을 파악	1시간 이내	지진사고	상급기관에 지시를 이해
	테러·협박	경찰 및 상위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		테러·협박	경찰 및 상위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

[서식 3] 작업중지요청제 관련 서식

위험사항 작업 중지 요청 신청서

소속 (업체)	ex. 평택시 청소년 재단 경영지원팀
직위 / 성명	사원 / ○ ○ ○
작업 근로자 수	
현재 상태 및 요청 내용	ex. 위험 요인에 대하여 기술
조치사항	ex. 작업 중지 시간, 대피 내용, 조치 내용 등 기재
기타사항	

[서식 4] 아차사고 관련 서식

아차사고 신고서(종사자 작성용)			
부 서 명			
작 업 명			
발생일시		발생장소	
아차사고 유형	※해당란에 ✓ 표시 ☐넘어짐 ☐부딪힘 ☐미끄러짐 ☐접질림 ☐찢림 ☐베임 ☐떨어짐 ☐맞음 ☐쏘임 ☐끼임 ☐칼림 ☐기타()		
아차사고 내용			

아차 사고 보고서

결 재	실 무 자	팀 장	기 관 장
협조(안전담당자)			

아차 사고 내용

작업명	등급	☐ A, ☐ B, ☐ C (※ A,B등급은 기관장/ C등급은 팀장 전결)
작업내용		
사고내용		
발생원인		
예방대책 (조치내용)		
작업현장 상황 설명 (사진, 도면)		

아차 사고 등급 분류 기준

등급	위험정도	조치
A	중대재해가 예상되는 경우	- 중대재해 발생과 동일시 - 작업 중단 후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B	재해(사고)발생 시 중상* 또는 시설물 부분 파손 및 작업의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 산업재해 발생과 동일시 - 임시 조치 후 안전대책 수립·시행
C	재해(사고)발생 시 경상** 또는 당해 시설물의 파손이 예상되는 경우	- 현 상태로 작업은 가능하나, 교육 시행 등의 안전관리 조치

* 중상: 하루 이상 입원 및 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이나, 신체활동 부분을 상실하거나 그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경우

** 경상: 사망, 중상을 제외한 부상